

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안

의안 번호	1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2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장애인복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해 평창군이 설치·관리하는 동 시설안에 자판기 및 매점허가를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하여 평창군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
- 현재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적이 부진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가. 공공시설내에 사무용품 및 또는 신문 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 (안 제1조)
- 나. 위탁시 1개월전에 군보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공고(제3조)
- 다.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이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(안 제4조)
- 라. 시설관리자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에게 우선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하며, 다만,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안제5조)
- 마.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(안 제6조)
- 바. 제6조의 규정위반 및 계약자가 사망한때, 시설관리자의 승인없이 양도·양수하였을 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설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(안 제7조)
- 사. 징수기준 방법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며,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 허가가능(안 제8조)
- 아. 이 조례 시행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기간까지 그 효력 인정함(부칙②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별첨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 예고 : 평창군공고 2005-41(2005.1.26)

마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(이하 "군"라 한다)이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①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군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읍·면사무소의 청사
2. 군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
3. 군이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

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.

제3조(사전공고) 군수, 직속기관장, 사업소장 및 읍·면장(이하 "시설관리자"라 한다)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·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1개월 전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신청자격 및 구비서류)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평창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
2. 계약신청서(시설관리자가 정한 소정양식)
3.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4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대상자 증명서(해당 장애인에 한한다)

제5조(우선계약 등) ①시설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. 다만,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,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시설관리자가 결정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

2. 저소득 장애인
3.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
4.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

제6조(계약자의 의무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」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·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사업자는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, 시설관리자가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시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「식품위생법」에 적합하게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계약의 해지) 시설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2.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이 사망한 때
3. 시설관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·양수하였을 때
4.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

제8조(사용료 및 허가기간)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「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」에 의하며,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기간까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

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
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(전화번호)		
신청 사항	설치장소			
	허가종류	매점, 자동판매기		
	신청규모	자동판매기 대 (음료수, 담배, 커피, 기타), 매점 m ²		

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(매점, 자동판매기) 설치 허가를 신청합니다.

 년 월 일

신청인 주 소 :
 성 명 : 인

귀하

구비서류

1. 장애인등록증 1부
2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 1부

관계 법령 발췌

□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법률

- 제2조(장애인의 정의) ①장애인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.
 2.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- 제38조(생업지원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품·사무용품·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의하여 국내유포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당해 장애인이 국내유포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, 위탁 또는 지정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.
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·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,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